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12.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사유

-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등에 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설계자문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
- 나.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3조)
 - 30억이상 건설공사는 시장의 요청에 의거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
- 다. 관계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설계자문 요청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라.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내용을 사전심의 요청하고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마. 위원회는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 2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구미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
4. 당해분야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기술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6.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 단서, 제85조 제6항 및 제9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사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5.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6.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시에서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 30억(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8.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소집시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문요청) ①관계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의 설계자문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시 그 사유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중앙 또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

한 부분을 자문요청 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 교량,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하수도, 하천, 수리시설 등 각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⑤소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전심의) ①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30억이상 100억미만 : 5일이내

2.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200억미만 : 7일이내

3. 총공사비 200억이상 300억미만 : 10일이내

4. 총공사비 300억이상 : 15일이내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을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결) ①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의결할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 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위원회가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설계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④위원회가 대안입찰서의 설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 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 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 신공법, 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기간) 위원회는 안건을 부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10일)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등 건설공사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과 도로시설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자문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당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설 계 자 문 (심 의) 요 청 서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 설계자문(심의)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착 공 예 정 일 :
6. 준 공 예 정 일 :
- 7.설계상 특기사항 :

(불임)

년 월 일

신 청 인

과장

(인)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 계 변 경 자 문 요 청 서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당초 설계 금액 :
- 변경 설계 금액 :
6. 착 공 예 정 일 :
- 준 공 예 정 일 :
7. 계 약 업 체 명 :
8. 변 경 사 항 :
9.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인

과장

(인)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